



*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에 따른 부패·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**민원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**하시기 바라며, 조사결과 부패행위·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**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.**

※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(신고자의 비밀보장), 제88조(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)

※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(정의), 제8조(공익신고의 방법), 제10조제5항(공익신고의 처리), 제12조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) 및 제30조(벌칙)

번호**제목****상태****부서명**

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.

본인확인 후 글쓰기

Copyrights (c) 영암군청.